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구자근 의원 외 10인

2. 제안이유

-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와 신규 투자 수익 저하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대중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과의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로 하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중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5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 보조금 지원 대상 명시와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지원범위 명시(안 제5조)
 -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 조례안 검토결과

-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주택 지역 신규투자 회피로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
-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배관 설치 가능성이 낮은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을 중점설치대상 지원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 등 서민계층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시균형 발전,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2008. 4. 2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권리·의무·승계·일방적인 공급중지조항 등 유형별 26개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을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공급 약관의 규정 및 공급 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 다만, 공공재의 주민지원 격차해소를 위한 도·농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가스 본관이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하는 배관설치 방안이나 대책을 재정수반요인과 함께 조속히 추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